



2004 양록자조금 사업 2억 확정

- 양록인들의 참여 여부가 성패 좌우 -

2004년도에는 양록자조금제도가 도입돼 양록과 관련된 각종 홍보, 연구 등 양록산업 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전망이다.

양록자조금이란,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양록인들이 양록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양록인들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자조금 운영 방식은 최초 양록인이 자조금을 거출해 자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농림부에서 확인한 후 양록인들이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보조해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

농림부는 최근 자체 심의를 거쳐 양록인들이 1억원의 자조금을 모아 자조금 용도에 맞게 사용했을 경우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양록자조금 사업 규모는 자체 기금과 보조금을 합쳐 총 2억 원이다.

자조금이 거출되면 각종 대중매체와 홍보 팜플렛 등을 통한 국산녹용 홍보, 양록연구 및 교육, 사슴요리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거출 규모에 따라 라디오, TV를 통한 국산녹용 홍보도 가능할 전망이다.

본회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보조금으로 1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생산자단

체가 그 이상을 거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도 더 늘어날 수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며 생산자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사업 기금도 확장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현재 자조금 사업이 확정된 축종으로는 사슴을 포함해 한우, 젖소, 양돈, 닭, 오리 등 총 6축종이다. 이중에서 사슴을 제외한 나머지 축종은 모두 의무 자조금으로 각 축종에 해당되는 생산자들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조금을 제출해야 하나 사슴은 임의 자조금으로 자조금 제출에 강제 사항이 없다. 따라서 양록자조금사업 시행시 무임승차 논란도 어느정도 예견되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자조금은 우리 스스로의 살길을 찾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양록인이라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급적 자조금을 거출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내년도 자조금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연도말까지 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농림부에 양록자조활동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11명은 본회 회원이, 나머지 4인은 학계, 소비자, 유통인, 농

립부 해당 공무원이 각각 참여하게 된다.

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 거출 방법 및 사용 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 양록자조금 Q&A

양록자조금에 대해 자주 거론되는 질문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1. 양록자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 TV나 라디오, 각종 인쇄물을 통해 우유와 돼지고기를 홍보하는 선전을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홍보에 소요되는 돈은 모두 자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슴도 자조금이 어느정도 거출되느냐에 따라 홍보 매체도 결정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연구, 시식회, 사슴요리개발 등 양록산업을 위한 공익 목적에 사용되게 된다.

2. 양록인들이 자조금을 거출하면 농림부에서 무조건 그만큼을 보조해 주는 것인가?

– 아니다. 생산자단체 회원들이 낸 자조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자조활동 자금을 설치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비영리 사단법인 ; 양록협회)과 농협중앙회 둘 뿐이다. 농협중앙

회가 양록자조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 회원이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만 농림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비회원이나 양록관련 업체들이 출연한 기금은 협찬금으로 처리되어 자조금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3. 양록자조금이 양록협회 운영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양록자조금은 자조금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회계로 처리된다. 농림부는 양록자조금이 사용 목적에 올바로 사용되었는지 감사를 진행하며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된다.

4. 자조금 거출시 양록관련 업체나 양록협회 임원, 혹은 여유가 있는 양록인들이 많은 기금을 기탁하는 것이 어떤가?

– 자조금 거출은 거출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생산물인 녹용 한냥당 얼마, 혹은 사슴 두당 얼마 등 거출 기준에 의거해 조성된 기금만이 자조금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어느 한 특정인이 여유가 있다고 많은 돈을 기탁해도 본인의 거출 기준액 이외에는 자조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국양록**